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결과 미제출 귀화신청자 구제방안 안내

'20. 2. 11.(화) 법무부 국적과

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제1차수가 중단됨에 따라 귀화신청자가 국적법에 따른 1년 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
■ 이에 법무부는 **'19. 2. 8.~'19. 5. 28. 귀화신청자**에 대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**종합평가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'20. 5. 29.까지 연장하였습니다.** '19. 2. 8.~'19. 5. 28. 귀화신청자께서는 늦어도 제4차수 평가에는 응시하시어 결과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(신청가능횟수를 최대 3회까지 부여)

※ <예시 1> '19. 2. 14. 귀화신청자 정00씨는 '19년 종합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다.(1회:x) 이후 '20. 3. 21. 제2차 시험 응시 및 불합격(2회: x), 제3차 시험 미응시(응시횟수 산정 안됨), '20. 5. 23. 제4차 시험 응시 및 합격(3회: o)하였다. 이 경우 정00씨는 제4차 결과발표일 '20. 5. 29. 까지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면 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
■ 또한, 귀화신청자의 귀화신청일이 종합평가일과 동일하여 결과를 결과발표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1년 이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<예시 2> '19. 5. 23. 귀화신청자 서00씨는 '20. 5. 23. 제4차 종합평가 시험에 응시하였다. 다만, 평가에 대한 결과가 6일이 경과한 후에 발표가 되는 관계로 '20. 5. 29. 합격 결과를 제출하게 되었다. 이 경우 서00씨는 제4차 결과발표일 '20. 5. 29.까지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를 1년 내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며, 결과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한다.